

대구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가단1256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재

담당변호사 서인규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웰스

담당변호사 김기수

변 론 종 결 2024. 3. 7.

판 결 선 고 2024. 4. 4.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협의에 의한 이혼 약정 가운데 C의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약정을

1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판결금 채권

1) 원고는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129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10. 13. ‘C는 원고에게 30,41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9.부터 2022.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위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 2022나2633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3. 7. 12. C에 대하여 원고에게 9,586,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9.부터 2023. 7.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추가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C의 협의이혼

피고와 C는 1988. 7.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00. 2. 2.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2017. 3. 15.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대구가정법원 2021호협4820호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여 2022. 1. 25. 그 의사확인을 받고 2022. 1. 26.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와의 혼인기간 중인 2019. 12. 2.부터 2022. 1. 25.까지 C가 관리하던 피고와 C의 딸 D

명의를 예금계좌에서 합계 30,759,566원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는데, C와 피고의 혼인 기간,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을 참작하면 협의이혼에 따른 적정 재산분할비율은 50:50이라 할 것이므로 위 금액 중 15,379,783원(= 30,759,566원× 1/2)은 C의 몫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약정을 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재산분할약정은 1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 중 ‘C는 옷만 가지고 나갔고 부동산을 포함한 나머지 재산은 모두 피고가 가지는 것으로 하였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피고와 C 사이에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C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재산분할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와 C 사이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거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C가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명선